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3074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B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접수 제215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B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10. 주식회사 C에 B의 대출 원금 및 이자 29,857,7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21차전821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7. 14. 'B는 원고에게 29,563,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21. 7. 29. 확정되었다.

나. B는 2020. 1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한편,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B의 자금 사정 등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여일 후인 2020. 12. 21.경 B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B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B의 채무 내역, B와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별지